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3. 28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4. 3

다. 상정일자 : 제1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상정, 계류

제11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탁 재활용하게 하거나 자체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에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기 삭제된 부분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는 주택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 하거나 자체 처리하도록한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